

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0. 12. 8.>

교육기관의 대행요건(제43조제3항 관련)

구분	교육시설(m ²)	교수요원(명)	전담직원(명)
종합교육기관	300	3	2
전문교육기관	100	1	1

비고

1.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. 다만,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교육시설 없이 지정받을 수 있다.
2. 연간 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교수요원 1명을 추가한다.